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각 부처에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채용, 전보, 승진, 파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처 협의·통보 등을 폐지·완화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휴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 등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5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군 채용 허용(안 제18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 직위별 선발이 원칙이었으나,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포함)의 경우 직위군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법 개선(안 제31조제3항, 제14항 신설)
다른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국가직 전입을 위해 7호 경채로 재임용된 지방공무원 전입자에 대해서도 강임·강등자에 대한 경력인정 조항 적용
- 다. 5급 승진임용 순서 변경시 협의 폐지(안 제34조제2항 및 제7항)
5급 승진임용 방법 변경시 인사혁신처장에게 대한 통보 규정과 5급 승진임용 명부 순위대로 임용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협의 규정 폐지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 라. 부처별 승진심사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34조의3제4항)
 인사혁신처장과 각 부처 소속 장관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
 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마. 필수보직기간 운영에 대해 부처 자율성 제고(안 제45조제7항, 제8항)
 경력경쟁채용자가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가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임용
 제청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한 필수보직기간 내 진보 하는 경우 필요하였던 인사혁신처장 통보 폐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9. 14. ~ 10.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가 동일한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다)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
 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에 임용하는 경우

나. 직렬·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

용하는 경우

제31조에 제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되거나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하였다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되어 제4항부터 제14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인정받는 경우, 종전 신분에서 적용받은 법령에 따른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신분에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강임한 사람이 강임 전 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을 적용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지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인정되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심사기준을 정하며, 소속 장관은 부처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7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4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은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받아야 하며, 소속 장관은 해당 전보를 사전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를 “받아야”로 한다.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2년의 필수보직기간

을 적용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경우
2. 특정 기관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 근무를 위해 선발된 경우
3.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또는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외에 육아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을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로, “공무원으로”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7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

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7장에 제57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11(휴직제도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의 운영을 위해 학위취득, 어학연수 등 유학휴직 사유 및 신청과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71조제2항제3호의 연수휴직의 운영을 위해 연수휴직의 신청과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71조제2항제6호의 동반휴직의 운영을 위해 신청과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별표 4의2 제2호 전문 임기제의 마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졸업자”를 “졸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한시 임기제의 9호의 자격기준란 중 “졸업자”를 “졸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 제3호 “졸업자등”이란을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신규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전입 후 승진한 경우 승진 전의 경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직제상 파견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중 인사특례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를 적용받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의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이 해제된 후에 적용한다.

제4조(별표4의2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에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① ----- -----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 -----, <단서 삭제>
1.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1. 직무가 동일한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직렬·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u>시에 정한 직렬·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u>	<u>및 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가.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u> <u>나. 직렬·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시험실시 당시에 정한 직렬·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u>			<u>에 따른 공무원이 되어 제4항부터 제14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인정받는 경우, 종전 신분에서 적용받은 법령에 따른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신분에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되거나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하였다 다시 이 영	④ ~ ⑬ (생략) <u><신설></u>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생략)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	④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강임한 사람이 강임 전 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4항을 적용한다.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급을 말한다) 공무원의 승진 임용 방법을 임용권자 단위별·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거나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되, 제3호에 따라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승진시험의 횡수별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
사별로 작성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
위기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_____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 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

⑧ ~ ⑩ (생략)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
이 정한다.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
무) ① ~ ⑥ (생략)

⑦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
관의 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공

1. (현행과 같음)

2. -----

----- 인정되는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사혁신처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심사기준을 정하며, 소속 장관은 부처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
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무원이 아닌 사람이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분야에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 ⑩ (생략)

<신설>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직제상 파견) 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파견 중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직제상 파견”이라 한다)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4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제상 파견은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총 파견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⑥ (생략)

<신설>

기간 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경우
2. 특정 기관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 근무를 위해 선발된 경우
3.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u>받아야 하며, 소속 장관은 해당 전보를 사전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u> 한다. 다만,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⑧ ~ ⑫ (생략)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생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u>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⑧ ----- ----- ----- ----- ----- ----- <u>받아야</u> ----- ----- ----- ----- ----- ----- ----- ----- ⑨ ~ ⑬ (현행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2.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 또는 국제업무 분야 여성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전출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57조의2(육아휴직) ①·② (생략) <신설>	-----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또는 신설·통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상 필요에 따라 전출하는 ----- ----- ----- ----- ----- ----- <삭제>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육아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외에 육아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	---	---	--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제57조의8(가족돌봄휴직) (생략)

<신설>

<신설>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
----. <단서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의8(가족돌봄휴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57조의11(휴직제도의 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의 운영을 위해 학위취득, 어학연수 등 유학휴직 사유 및 신청과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71조제2항제3호의 연수휴직의 운영을 위해 연수휴직의 신청과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71조제2항제6호의 동반휴직의 운영을 위해 신청과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제16조제6항 및 제7항 관련)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급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5